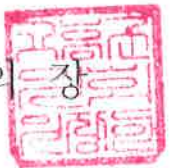


「고흥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청년기본법」 제4조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고흥군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와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7조~제8조)
- 상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8조~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 2023. 9. 25. ~ 2023. 9. 30.(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 061-830-5032,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 조례 제 호

고흥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진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립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 실태조사
3.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공동체 참여 및 활동지원 사업
2.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3. 고립청년과 그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사업
4.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군수는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군수는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흥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